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3. 1. 2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 1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1. 1. 14.
다. 상정일자 : 제9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3. 1. 22)
 상정, 심사, 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마포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보조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는 마포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다음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
 - 교육정보화사업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개발
-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 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당해연도 보조대상 사업과 예산액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지토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교육경비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구 본청 4급이상 공무원 1인
 - 구의회 의원 2인
 - 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는 장학관 1인
 - 교육전문가 2인
 - 구에 거주하는 덕망있는 학부모 3인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선정 및 보조사업의 우선순위결정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여부 및 보조사업의 결정·변경결정
 -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안 제12조)
-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의 개시 (착공) 및 종료(실적)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우리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그리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에 구가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의 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기준액을 제한하였음.
- 안 제4조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그리고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등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보조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안 제7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총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위원회는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선정과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1. 12. 19 법률제6522호)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2000. 12.27 대통령령제17025호)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1C 고도의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질적·양적 수준에 달려 있음을 감안할 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혁하고 질 좋은 교육여건으로 개선 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구가 아닐 수 없으며 가정·학교·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 조사중인 초등학교 환경개선 기초실태 현황을 보면 관내 20개 초등학교중 별도의 식당을 가지고 급식을 하는 학교는 7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교내급식 및 교실배식 등을 하고 있으며 도서실 운영실태가 매우 열악(전담교사 배치 2개학교)한 실정에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실험기구 등 학습 기자재의 부족 그리고 학생들의 잠재능력개발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한 기회제공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시 사교육 기관인 학원에 비하여 교육시설 및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운영이 형식에 치우치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취약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의 운동장 개방,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실시 및 정보화 교육장소 제공 그리고 평생 교육 강좌실시 등 지역주민 및 학부모와 연계된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조례(안) 제7조 제4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구의회 의원 2인, 교육전문가 2인 및 구에 거주하는 덕망있는 학부모 3인의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연고에 의한 특정학교 편중 지원 배제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와의 형평성,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능력 있는 전문가 배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본 조례 보조금은 교육청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교육청과는 독립예산체계이므로 무관 하나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목적의식은 일치함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장代)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거론된 타 위원회와 달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불가를 한 이유는?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타구사례에 주로 1년으로 되어 있고 임기가 길수록 학교측의 청탁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임기 1년에 연임불가는 형평성에 문제 있음.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중 관리과장의 직급은?
- 답변요지(김경숙 가정복지과장) : 사무관임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본 보조금에 대하여 학교에 통보여부와 통보했다면 반응은?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공문으로 관내 학교에 다 통보했으며 반응은 긍정적인 학교와 귀찮아 하는 반응을 보이는 부정적인 학교도 있었음.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1회성 운영이 아닌가?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예산액 10억을 일괄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성이 아님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학교에 지원할 보조금의 상한액 결정은?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3. 1. 22 이종일 위원 외 1인
- 나. 수정이유 :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중 일부 위촉위원의 임기를 수정하고자 함
-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5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서"로 함.
 - 안 제7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5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서"로 한다.
- 안 제7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1.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마포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보조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는 마포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다음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

- (1) 교육정보화사업
-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사업
- (3)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중·장기 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당해연도 보조대상 사업과 예산액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지토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교육경비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1) 구 본청 4급이상 공무원 1인
- (2) 구의회 의원 2인
- (3) 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는 장학관 1인
- (4) 교육전문가 2인
- (5) 구에 거주하는 덕망있는 학부모 3인

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1) 당해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선정 및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여부 및 보조사업의 결정·변경 결정
- (3)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사.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1)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아.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안 제12조)

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의 개시(착공) 및 종료(실적) 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근거법령

-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1.12.19 법률 제6522호) 제11조제6항
- 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2000.12.27 대통령령 제17025호) 제2조 등

4. 조례(안) : 불임

5. 예산조치 : 필요함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2. 12. 16~2003. 1. 5) 결과, 접수된 의견 미반영함.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3.1.13)
- 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1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교육장	<p>○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구 본청 4급이상 공무원 1인, 구의회 의원 2인, 관할 교육청 장학관 1인, 교육전문가 2인, 구에 거주하는 덕망있는 학부모 3인중 “관 할교육청 장학관 1인”을 “관할교육청 관리과장 1인”으로 변경요망</p>	<p>○ 미반영</p> <p>- 조례(안)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하여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짐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의 개 발 및 운영 등 학교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 교육청의 예산과는 무관하게 실제 학생 및 지역주민의 교 육 등 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 항으로 이와 더욱 밀접한 관 련이 많은 장학관 참석이 바 랍직함.</p>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구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5.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중·장기 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학교교육 여전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③제2항의 보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본청 4급이상 공무원 1인
2. 구의회 의원 2인
3. 구 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는 장학관 1인
4. 교육전문가 2인
5. 구에 거주하는 덕망있는 학부모 3인

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 제3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보조사업의 결정·변경결정
5.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학교환경개선담당주사로 한다.

④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한 학교장 또는 학교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교부신청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